#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 발의연월일: 2024. 6. 4.

발 의 자: 권칠승·송옥주·민병덕

강준현 · 서영교 · 김종민

박 정・조 국・홍기원

문정복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화성시는 2023년 12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였음.

시흥시도 2023년 12월 기준 총 인구 58만 5,203명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.

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「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」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(인구: 88만 7,015명)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(인구: 80만 6,067명)보다 인구가 많고, 시흥시(인구: 51만 2,030명)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(인구: 48만 3,245명)보다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 만 이상의 시·군으로서 시·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·군에 는 시·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,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항 신설, 별표 2, 별표 7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법원장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·군으로서 제1항에 열거된 각급 법원이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·군에는 시·군법 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 광명시·군법원란 다음에 화성시·군법원란 및 시흥시·군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화 성	화 성 시
안 산	시 흥	시 흥 시

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 원		용 인	경기도	용인시
		오 산	경기도	오산시
		화 성	경기도	화성시
	성 남	광 주	경기도	하남시・광주시
	여 주	양 평	경기도	양평군

여 주	이 천	경기도	이천시
평 택	안 성	경기도	안성시
안 산	광 명	경기도	광명시
안 산	시 흥	경기도	시흥시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202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시흥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) ① • ② (생 략)	제2조(설치) ① • ② (현행과 같
	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대법원장은 인구가 50만 이
	<u>상인 시·군으로서 제1항에 열</u>
	거된 각급 법원이 구역 내에
	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・군
	에는 시·군법원을 설치하기
	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